#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97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이병훈·유정주·박완주

송재호・박 정・이상헌

주철현 • 민홍철 • 이장섭

민형배 · 김철민 · 박성준

전혜숙 · 신영대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진흥에"를 "진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4조의4제1항 본문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재"로 한다.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8제1항 및 제3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장(제53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되지"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을 "지정절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을 "지정할"로,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을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을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를 "관리"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를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시·도등록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 재자료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3호 중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을 "제39조 또는"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를 각각 "제74조제1항 에"로 한다.

제9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u>&lt;</u> 삭 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u>다.</u>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	
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	
<u>화재</u>	
2.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	
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	
록한 문화재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2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	
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	
문화재 보전 및 <u>진흥에</u> 관하여	<u>진흥,</u> 근현대문화
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 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1. ~ 7. (생 략)
-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신 설>

- 9. ~ 11. (생략)
- ② ~ ① (생 략)
-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문화 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 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 여야 한다.

_	 	 	 	 	 	 	 	 	
_	 	 	 	 	 	 	 	 	
_	 	 	 	 	 	 _			

- 1. ~ 7. (현행과 같음)
-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 록, 등록 말소 및 보전 · 관리 에 관한 사항
-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지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9. ~ 11. (현행과 같음)
- ② ~ ⑩ (현행과 같음)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 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 화재-----

#### ②・③ (생략)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 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 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
련 등) ①
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u>0 7 4 4 /11</u>
<u>.</u>
② ~ ⑤ (현행과 같음)

#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 ② (생략)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 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④ ~ ⑥ (생 략) 제5장 국가등록문화재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

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일부개정법률

1				「근	·현대	문
화유	산의	보전	• 관리	및	활용	에
<u>관한</u>	법률	저	2조제:	2호	베따	른
등록	문화	<u> 게</u>				

② (현행과 같음)

3	「근현대문
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2호에 따른
<u>등록문화재</u>	

④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 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 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삭 제>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 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 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 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 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 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 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 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 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 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 •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 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 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 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 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
   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
   화재
-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 가등록문화재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

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 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 · 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 | <삭 제> 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 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 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 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 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 을 상실한다.
-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 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 · 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 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및 제2항·제3항, 제52조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관리단체"로 본다.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제	603	조(일	일반	동신	문호	<b>화</b> 재	수출	등
	의	금;	지)	1				
				근현	l 대	문화유	구산의	보
	<u>전</u>	• 관	리	및	활-	용에	관한	법
	률_	에	따	라	등록	되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하다.		

- 1. 2. (생략)
- ② ~ ⑥ (생 략)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 도등록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등) ①・② (생략)

-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 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 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 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 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 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 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 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b>4</b>

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 -----권고할 수 있 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 ·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지정절차를---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 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지정할-----시 ·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에는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 -----지정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 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앞에 해당 특별시ㆍ광 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 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다.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 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 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 치) ①·② (생 략)
  -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2조(경비부담) ① <u>제70조제1항</u>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 도등록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 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 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u>시·</u>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
치) ①·② (현행과 같음)
3
<u></u> 「근현
대문화유산의 보전 · 관리 및 활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u>등록문화재</u>
<u>.</u>
제72조(경비부담) ① <u>제70조제1항</u>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u>7}</u>
_
·
②
xl.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u>시·도등</u>록문화재의 보존·관 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 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제73조(보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시 ·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 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u>시·도지정문화재, 문</u>화재자 3.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 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 <삭 제> 재자료의-----4.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 | 4.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의-----
-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u>제1항제1호부</u> ② -----<u>제1항제1호</u> 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 및 제3호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 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경우

있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 등록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② (생략)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 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 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 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 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 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 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 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u>"문화재위원회"는</u> 각각 "시· 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 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 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 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 1. (생략)
- 2. 등록문화재

3. • 4. (생략)

②·③ (생 략)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35조제1항, <u>제39조</u>, 제56조 <u>제2항 또는</u> 제60조제1항 단서 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 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1. (현행과 같음)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
   개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청문)
,
1.•2. (현행과 같음)
3제39조 또는

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 6. (생 략)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
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한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그문화재는 몰수한다.

②・③ (생 략)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 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를 한 자

-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 1. ~ 2의2. (생 략)
  -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 7. (생략)
  - ②·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 제>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 6. (생 략)
  - ⑤ (생략)

제103조(과태료) ①
1. ~ 2의2. (현행과 같음)
<u>&lt;</u> 삭 제>
<u>&lt;</u> 삭 제>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b>4</b>
1.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